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2. 11 선고 2019가단132961 판결 [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

담당변호사 신진우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진

변론 종결 2020. 9. 18

판결 선고 2020. 12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1) 남양주시 C 대 331㎡는 2018. 7. 4. 원고와 D 앞으로 2018. 4. 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)남양주시 E 전 347㎡는 2018. 5. 16. 원고, D, F, G, H 앞으로 2018. 2. 2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이후 F은 2018. 7. 24. 원고, D, G, H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8. 6. 27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E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9. 12. 30. I, G 앞으로 2019. 11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3) 남양주시 J 전 458㎡ 는 2018 . 5. 16. 원고,D, F, G, H 앞으로 2018 . 2. 2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이후2018. 7. 24. G은 원고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,H은 원고의 나머지 지분 전부와 D,F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2018 . 6.27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.

H은 2018. 10. 2. 위 J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K 앞으로 2019. 8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.

4)남양주시 L 전 369㎡는 2018. 5. 16. 원고,D, F, G, H 앞으로 2018. 2. 2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이후 원고는 2018. 7. 24.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. 6. 27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.

5)남양주시 M 전 326㎡는 2018. 5. 16. 원고,D, F, G, H 앞으로 2018. 2. 2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이후 D은 2018. 7. 24.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. 6. 27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와 D은 남양주시 N 일대에 4동 규모의 노인복지시설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 라 한다)을

신축하기로 하고, 2018. 6. 2. 피고와 사이에 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관하여 계약금액 44억 4,00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위 공사를 '이 사건 공사', 위 계약을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 한다).

위 도급계약서에는 선금금 300,000,000원을 도급계약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.

다. G은 2018. 6. 5. 피고에게 150,000,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9. 1. 22. 남양주시 C, O, L 토지 지상에 연면적 1,146.37㎡규모의 노인복지시설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, D은 2019. 3. 6. 남양주시 C,M 토지 지상에 연면적 1,123.72㎡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,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2내지 5호증, 을 제4,5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

원고는 2018. 6. 5.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150,000,000원이 이 사건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금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,피고는 남양주시 P 외1필지에 시행하는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2, 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G의 계좌에서 150,000,000원이 이체된 것은 2018. 6. 5.인데,남양주시 P 외 1필지에시행하는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일은 2018. 4. 12.,계약금은 125,000,000원이어서 그 지급시기와 금액이상이 한 점,이 사건도 급 계약서에 따르면 선금금300, 000, 000원을 계약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,원고 부담분에 해당하는150, 000,000원이 도급계약 후 3일이 되는 2018. 6. 5.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, 계좌명의인인 G도 150,000,00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금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,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. 6. 5. 피고에게선금금 150,000,000원을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판단된다.

나. 선금금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원고와 D, F이 각 개별소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도 급 계약의해 제를 원인으로 한 기지급 공사대금150,000,000원의 반환을 구한다.

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,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대하여 하여야 하므로(민법 제547조 제1항),원고를 비롯한 공동도급인 전원이 피고를상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,원고를 제외한 공동도급인인 D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이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조미옥